

## 육아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내

□ **수급자격 인정 요건**(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, 「고용보험시행규칙」 별표2 제10호) 임신, 출산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①육아 등의 문제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, ②사업주에게 육아 등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, 직무전환, 육아 휴직이나 휴가 등을 요청했지만 사업장의 사정상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퇴사사유로 인정됨(단, ③육아로 인한 업무 수행의 곤란성이 해소된 이후에야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함)

□ **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 준비 서류**

① **주민등록 등본**

- 자녀와 본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(만8세 이하 및 동거 확인)

② **사업주 확인서**

-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(이직 회피 노력)  
- 이러한 요청이 사업장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았는지 여부 확인

③ **신청인의 확인서 및 진술서**

-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소명

④ **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할 자료**

- 배우자의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

⑤ **육아 등의 문제가 해소가 되었다는 입증할 자료**

- 재원증명서  
- (조부모 등의)육아확인서

□ **주의 사항**

육아 등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 즉, 육아의 필요성(육아를 해야 하는 기간)이 해소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(120일~270일) 전부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일 후 1년 이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.

※문의: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(팩스 0508-8230-0153, 전화 032-320-8955~9)



##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(신청인용)

성 명		생년월일	
사업장명		퇴사일자	
확 인 내 용 (해당사항에 √표시)			
1.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출퇴근시간 (구체적으로 기재)			
2. 신청인의 소관업무 성격상 임신 및 육아와 병행이 가능한 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가능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불가능함		
3. (위와 관련하여) 직무전환 배치 등을 사업장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있다(부서명 및 업무) : <input type="checkbox"/> 없다		
4. (위와 관련하여) 사업장에서 신청인에게 전환배치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환배치 가능(부서명 및 업무) →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환배치 불가능		
5. (위와 관련하여)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장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있다 <input type="checkbox"/> 없다		
6. 휴가나 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- 있을 경우 요청기간 및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있다 (요청기간:            ~            ) (요청방법:            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다		
7. 회사 규정이나 사정상 퇴사 대신 휴가나 휴직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활용 가능 (가능 기간 :            ) <input type="checkbox"/> 활용 불가능 (이유 :            )		
8. 배우자가 현재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다		
9. 배우자가 현재 취업 중인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다		
10.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이직과 관련된 기타 참고사항			

위의 사실을 확인 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확인자 :

(서명 또는 인)

중부지방노동청 부천시청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귀하

\* 유의사항: 고용보험법 제108조 제3항에 따라 동 의견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제1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# 수급자격 신청인 의견진술서

성명		생년월일	
사업장명		퇴사일자	
회사주소		회사전화번호	
담당업무			

위 본인은 사업장에서 퇴사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필로 의견을 작성합니다.  
(※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)

상기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수급자격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※ 유의사항: 고용보험법 제108조 제3항에 따라 동 의견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제1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# 육아 확인서

○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인 인적사항

- 성 명:
- 생년월일:
- 연 락 처:
- 주 소:

위 수급자격 신청인 ( )의 자 (성명: )를  
본인 (육아자: , 관계: )은  
20 년 월 일부터  
육아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 
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○ 위 확인자(육아자) 인적사항

- 성 명:
- 생년월일:
- 연 락 처:
- 주 소:

위 확인자(육아자) 이름: (서명 또는 인)

중부지방노동청 부천시청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귀하